

[2-1-1] 학칙 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	개정(안)	개정 사유
제63조(직제) ① 우리대학에는 교목실, 비서실 , 대외협력실, 감사실, 교무혁신처, 학생지원처, 기획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 ②~③ 생략		제63조(직제) ① 우리대학에는 교목실, 비서홍보실 , 대외협력실, 감사실, 교무혁신처, 학생지원처, 기획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. ②~③ 현행과 같음	- 비서실을 비서홍보실로 변경하여 홍보업무를 이관하고자 함
		부 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
관련 규정	직제규정		